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704호 2025. 8. 5. (화)

고시 · 공고

- 「목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
- 「2025. 목포시 시민의 상 심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14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홍보과 ☎ 061-270-8539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 입 법 예 고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8. 6.

목 포 시 장

1. 조 례 명 : 「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

2. 개정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내용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고 교통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등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항 이동을 정비함(안 제12조제1항)
-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함(안 제23조제1항)
- 교통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정함(안 제26조제1항)
- 조항 신설·변경에 따른 조항 이동, 내용 및 용어 변경을 정비함(안 제23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7항)

4. 조례개정(안) : 별 첨

5.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6. 관련부서 의견

- 예산사항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이상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이상없음
- 규제심사(심의)대상 여부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기간 : 2025. 8. 6. ~ 2025. 8. 17. (12일간)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9.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8월 18일 18:00까지 목포시장(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나. 제출방법 : 우편, FAX, 전자메일, 방문

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목포시청 교통행정과(운수사업팀)

○ 주 소 : (우 58613)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용당동)

○ 전 화 : 061) 270-3662, 팩 스 : 061) 270-3591

○ 이메일 : kse0310@korea.kr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참조
(<http://www.mokpo.go.kr>) 또는 목포시청 교통행정과(☎061-270-366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이동약자의 교통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별첨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을 “시행규칙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등록 신청 접수”를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운영”을 “안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4.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운영 및 관리
6. 특별교통수단 등의 환승·연계 지원
7. 출발지·도착지·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8. 특별교통수단 등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교통수단 등”을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으로,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로, “실시해야”를 “실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통약자 서비스”를 “교통사업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교통약자서비스 및 성폭력 예방 교육

3. 택시운수종사자: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통사업자는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1호에 따른 교육을 1회,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 운수종사자는 제1항2호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④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6조제5항(종전의 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를 “방법 중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교육에 참석한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교육의 참석자”로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5.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 개선의견으로 “우선”이라는 단어를 지양하여 이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4조 조문의 ‘우선’이라는 제한적 용어를 삭제하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로 개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관계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6. 규제심사(심의) 대상여부 검토 : 해당없음

7.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감사실)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여성가족과) : 의견없음

8.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9. 입법예고

- 기 간 : 2025. 8. 5. ~ 8. 14.(10일 간)

10. 사전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1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8월 14일까지 목포시장(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다. 제출 방법 : 우편, 팩스(061-270-8827), 직접방문 등

12.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팀(☎ 061-270-882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본문 중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구매촉진) ①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관내 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매 촉진)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u> 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구매 촉진)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관내 상공인 상품의 구매</u> 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2025. 목포시 시민의 상」 심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2025. 목포시 시민의 상」 심사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와 응모바랍니다.

2025년 8월 5일

목 포 시 장

1. 모집인원 : 10명 이내

- 경제계 2명, 교육·문화계 2명, 체육계 2명, 여성계 2명, 시민단체 2명 등

2. 참여자격

-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소속된 자, 개인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활동 경력이 있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제외대상 : 「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 제4조제7항 심사위원 연임 제한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심사위원 중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분야별 전문인사, 공개모집인사는 제외됩니다.

3. 선정방법 : 서류심사 선정

4. 선정기준

- 자격기준에 적합하고 해당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 분야별 선정 인원보다 초과 인원이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
 - ① 해당분야 활동경력이 많은 자(최근 5년간)
 - ② 선정기준에 적합한 연장자
 - ③ 목포시 장기거주자
 - ④ 기타 지역사회 기여도 등

5. 지원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5. 8. 5.(화) ~ 9. 1.(월)

나. 접수기간 : 2025. 8. 5.(화) ~ 9. 1.(월) 18:00까지

다. 접 수 처 : 목포시 자치행정과 (☎270-3236)

(우)58613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6.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7. 제출서류(첨부물 참조)

- 목포시 시민의 상 심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서 1부(서식 1)
- 자기소개서 1부(서식 2)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 3) 및 재직증명서(필요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거주사실확인용)
- ※ 기타 증빙자료(표창, 논문 등)사본 1부

8. 대상자 선정통지 : 선정된 위원에게만 개별통지

9. 기 타

- 모든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위촉된 위원은 다음년도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자동 해촉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자치행정과(☎270-32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목포시 시민의 상 심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서

접수 번호	목포시 시민의 상 심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				지 원 분 야		사 진 소명함판 (3cmX4cm)
성 명	(한글)		성별	남	생년월일		
	(한자)			여			
현 주 소	(전화 :)						
	연 락 처				E-mail		
근 무 처							
최종학력	학 교		학 과		전 공		
주요경력	○ ○ ○ ○						
자격사항	○ ○ ○ ○						
첨부서류 : 1. 자기소개서 1부 2. 자격증명서, 재직증명서(필요시) 1부							
위와 같이 작성하고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성 명 (인) 목 포 시 장 귀하							

【서식 2】

자 기 소 개 서

1.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2.자 택	주소 : (우편번호 :)				
3.연락처	자택 : 근무처 : 휴대폰 :				
4.근무처	근무처명		부서명		직 위
	주 소	(우편번호 :)			
5.직업군	경제계() 교육·문화계(), 체육계(), 여성계(), 시민단체() (직책 및 업무 :)				
6.자격증	취 득 일	자 격 증 명		인가·관리기관	
	. . .				
	. . .				
	. . .				
7. 학력	학위취득일	학 교 명		학위 구분	졸업구분
	. . .				
	. . .				
	. . .				
	. . .				
8. 전공분야		세부전공 ① ②			
9.경력 현황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 업무경력

10. 저서 및 논문	제출일	출판사· 관련학회	논 문 명	주 요 내 용	참여자수
11. 기타 사항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목포시(자치행정과)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5. 목포시 시민의 상 심사위원 선정
-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생년월일, 성명, 주소, 직업, 학력 등 주요경력,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 이메일, 자격증
-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2025. 목포시 시민의 상 심사위원 선정 시까지
- ④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2025. 목포시 시민의 상 심사위원 응모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II.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시민의 상 선정 관련부서
-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시민의 상 심사위원 선정
-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생년월일, 성명, 본적, 주소, 직업, 학력 등 주요경력, 범죄사실확인서
-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기간 : 시민의 상 심사위원 선정시까지
- ⑤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2025. 목포시 시민의 상 응모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III. 고유식별정보처리에 관한 동의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해당 고유식별정보 명시)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2014년 8월 7일부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할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IV. 민감정보처리에 관한 동의

※ 민감정보 :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가입, 건강, 유전정보, 범죄경력 등의 개인정보

○ 민감정보(해당 민감 정보 명시)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V. 홍보·마케팅에 관한 동의

○ 2025. 시민의상 심사위원회 일정 안내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거부 시 2025. 시민의상 심사위원 응모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SMS(문자)	전화	이메일	주소(우편)	동의하지 않음	
	☐	☐	☐	☐		☐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 작 성 방 법 >

I.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항목,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등 4가지 내용을 서식에 명확히 기술
- 서식에 기술한 수집항목이 실제 수집하는 항목과 일치하도록 작성
- 보유 및 이용기간은 최소화로 하며, 법정기간이 명시된 경우 이를 반영
- 미동의 권리 및 불이익에 대해서 정보주체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동의(예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회원가입 및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 선택정보 :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회원가입일로부터 회원 탈퇴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은 가능하나 ○○○의 서비스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II.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 제3자 제공에 따른 5가지 고지사항을 명확히 기술

3자 제공에 따른 고지 및 동의(예시)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제공 : ○○기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신규서비스 개발, 상품 배송, 고객별 통계 분석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4.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년
 5.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제3자에게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등의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III.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가 있는 경우)

-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할 때는 별도의 동의란을 마련
-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 할 경우 수집하는 정보를 명확히 기술
예) 고유식별정보(운전면허번호)처리에 동의하십니까?

IV. 홍보·마케팅에 관한 동의

- 홍보/마케팅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할 경우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다른 정보와 구분하여 알린 후 별도의 동의

V. 14세 미만의 아동 법정 대리인 동의

- 만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